

화재안전조사 안내

【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】

1. 관계인(소방안전관리자)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

- 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24조 · 25조 · 27조 · 29조 등)

- 소방안전관리(보조)자 선임의 적합성(근무여부, 자격의 유효성, 실무교육 이수 등)

2. 소방계획서 작성 및 포함된 업무의 관한 사항

- 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24조, 제 34조,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4조 ~ 15조 등)

- 소방계획서의 작성 적정여부,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등
- 각종 점검 기록부 등 보존관리사항 확인(훈련·교육 기록 2년 보관)

3.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

-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)

-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
- 자체점검의 적정성(시설확인 누락여부, 허위점검 여부)

4. 화재예방 및 화기 취급에 관한 사항

- 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6조 등)

5.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
- 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16조,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)

-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사항
- 피난시설·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사항(비상구, 방화문, 방화셔터)

6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- 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24조 등)

- 점검실시여부. 점검자의 자격, 점검주기,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
(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최근 2년 치 자료 확인)
-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
[소방안전교육, 안전시설등, 비상구, 실내장식물(불연화, 방염물품), 정기점검, 보험 등]

7.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- 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
-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【 관계인께서 준비자료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】

1. 소방계획서

2. 자위소방대 조직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

3. 소방훈련, 교육 기록부

4. 점검기록부 - 대상별 해당되는 점검 기록부

(소방시설 자체점검-2년치, 다중이용업 정기점검-2년치, 위험물 정기점검-3년치)

【 기타 협조사항 】

- ※ 조사시 **관계인**(소유자, 관리자)이 **반드시 참여**하실수 있도록 협조바라며, 문의사항 있으시면 삼척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(033-570-8328) 전화 바랍니다.